

意見書 2

일 자 : 2001. 1. 29.

수 신 : 교육부장관

제 목 :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國立學校設置令改正令(案)에 關한 意見書

1. 사 유

- 가. 국립학교 도서관의 직제는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제13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정리과장은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규정되어 있음.
- 나. 입법예고(2001.1.19)된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안)의 제9조(대학의 하부구조) 제④항의 단서조항의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함.

2. 주요골자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안) 제9조(대학의 하부구조) 제④항의 본항 내용에는 사서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인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있어 사서서기관이 빠져있음.

사서서기관은 문헌정보학 관련 자격증을 소지자로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안) 제9조(대학의 하부구조) 제④항의 단서조항에 사서서기관을 삽입하여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사서서기관·사서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함.

3. 대비표

국립학교설치령(현행)	국립학교설치령개정령(안)	국립학교설치령수정(안)
<p>제13조(도서관) <u>①</u>도서관(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도서관을 제외한다)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은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강릉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대학교·부경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제주대학교·창원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정리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9조(대학의 하부구조)④과장 또는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사서서기관·공업서기관·시설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교육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9조(대학의 하부구조) 좌동 다만, 부속시설에 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은 사서서기관·사서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p>